

「장위11-1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」 사업시행구역 지형도면 고시

2020.12.23. 조합설립인가 및 성북구 고시 제2023-166호(2023.10.26.)로 조합설립 변경인가 고시되고, 2025.06.29.자로 조합설립변경인가된 성북구 장위11-1구역 가로 주택정비사업에 대하여 「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」 제23조 및 「토지 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에 따라 사업시행구역의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26년 5월 14일
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



1. 사업의 종류 및 명칭

- 가. 종 류 : 소규모주택정비사업(가로주택정비사업)
- 나. 명 칭 : 장위11-1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

2. 사업시행구역의 위치 및 면적

- 가. 위 치 :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위동 68-435번지 일대
- 나. 면 적 : 5,586m²

3. 조합의 명칭 및 사무소 소재지

- 가. 조합명칭 : 장위11-1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 (조합장 박성년)
- 나. 사무소 소재지 : 서울특별시 성북구 돌곶이로 97, 우성빌딩 401호

4. 사업의 착수 예정일 및 준공 예정일

- 가. 착수예정일 : 사업시행계획인가일로부터 3년 이내
 - 나. 준공예정일 : 착공일로부터 3년 이내
- ※ 상기 예정일은 사업 추진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

5. 지형도면에 관한 사항

○ 사업시행구역 결정 조서

구분	사업명	위치	면적(㎡)			비고
			기정	변경	변경후	
변경	장위11-1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	성북구 장위동 68-435번지 일대	5,473.9	증) 112.1	5,586.0	-

○ 사업시행구역 결정 사유서

구분	사업명	위치	면적(㎡)	결정사유
변경	장위11-1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	성북구 장위동 68-435 일대	5,586.0	조합설립변경인가에 따른 사업시행구역 면적 변경 사항 반영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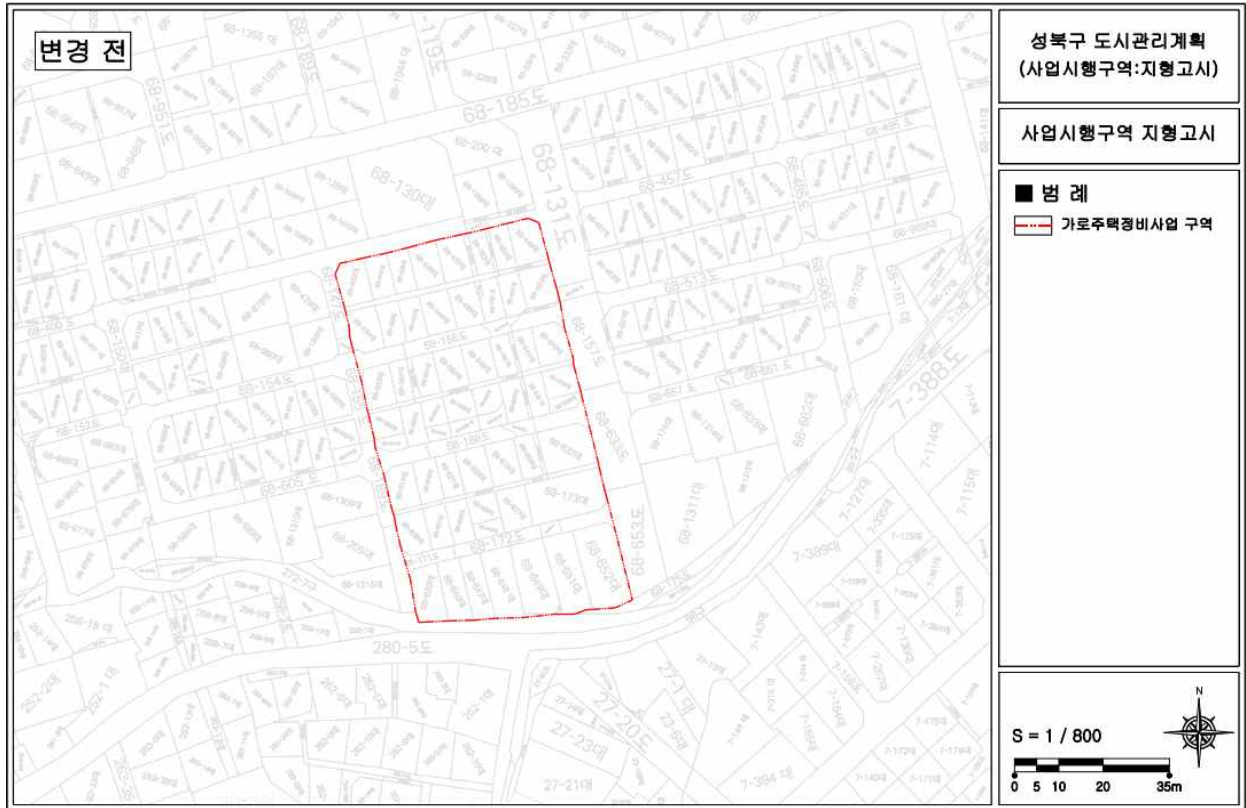
6. 지형도면 : 붙임 참조

-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‘토지이음’ 홈페이지에서 열람 가능

붙임 : 사업시행구역 지형도면 고시도

(붙임)

사업시행구역(기정)



사업시행구역(변경)

